탄 원 서

사건번호: 2026고합547

사건명: 내란중요임무종사

피고인: 신용해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3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에 올립니다.

저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재판에서 한 사람의 형사책임이 확인된 사실과 엄격한 증명에 따라 판단되기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면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개별 피고인에게 필요한 범죄의 고의와 행위에 관한 증명까지 완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용해 피고인에 관하여 특검은 포고령 위반자의 구금을 위한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지시 등을 내란의 중요한 임무 수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그 경위와 목적에 관하여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어느 한쪽의 주장을 증거 확인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각 지시의 실제 내용과 당시 인식, 그로 인한 후속 조치를 차례로 확인하시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최초 연락과 교정본부의 대응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분해 주십시오.

공개된 공소장 인용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뒤 교정본부에 비상소집을 지시하고, 과장급 회의를 열어 교정기관의 운영과 수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검은 같은 날 오후 11시 무렵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은 다른 재판에서 자신이 먼저 수용 여력을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말했으며, 장관으로부터 공간 확보를 직접 지시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피고인의 설명에는 이미 불리한 관련 판단이 존재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은 당시 수용 여력 자료가 일상적으로 집계되는 통계가 아니었다는 점과 관계자들의 언동 등을 종합해, 오후 11시 4분경 장관이 수용 여력 검토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간부회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지시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판단을 외면하거나 피고인의 설명이 이미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장관의 행위를 판단한 판결에서 확인한 사실과, 이 사건에서 신용해 피고인이 어떠한 목적을 인식하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맡았는지는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 비상소집의 목적, 회의에서 내려진 지시와 그 전달 대상, 피고인이 인식한 포고령의 내용이 각각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공소장상 시간 순서의 불일치 역시 당시 인식을 추론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정확하게 특정되기를 바랍니다.

2. 보고서의 제목 변경과 장관 보고 사실을 엄격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특검 측 공소사실을 인용한 보도에는 12월 4일 오전 0시 30분경 피고인이 수도권 교정기관의 추가 수용 가능 인원을 정리한 보고서를 전달받아 그 제목을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으로 변경하도록 했고, 오전 1시 4분경 이를 촬영하여 장관에게 전송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 3,600명이라는 보고 수치와 실무 자료에 기재된 3,682명이라는 수치도 보도됐습니다. 또 자료가 외부에 알려지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보관을 당부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 수정과 전송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단지 통상적인 행정 문서였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문구의 의미를 알고 변경하도록 했는지, 보고서가 누구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실무자가 어떠한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문서의 제목과 본문 내용, 실제 지시의 범위, 후속 활용 여부 역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보고서가 특정인의 위법한 체포·구금을 실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되었는지, 추가 시설 조정이나 대상자 인수 지시로 이어졌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활용을 예상하거나 의도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를 종합해 주십시오. 이러한 과정이 확인되어야 문서의 존재와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대한 의식적 가담 사이의 연결이 설득력 있게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긴급 가석방 검토와 교정기관 조치의 실제 단계도 살펴주십시오.

피고인은 포고령 위반자 수용에 대비해 서울구치소와 전국 교정기관에 관련 준비를 지시하고,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용 여력 보고서의 작성과는 또 다른 차원의 행위이므로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비상시 수용자의 안전과 과밀수용에 대비하는 통상적인 교정행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불법 구금 지원을 위한 조치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용 가능 인원 조회, 공간 조정 가능성 검토, 가석방 관련 규정 검토, 실제 대상자 선정, 수용시설 재배치 및 신규 구금자 인수는 각기 다른 단계입니다. 어떤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지시가 그 조치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에 머문 행위와 실행에 이른 행위를 구별하는 일은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그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더구나 긴급 가석방에 관한 검토가 당시 실제로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안이나 임시 절차를 전제로 한 것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문건 원문을 대조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법적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집행을 전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 것인지를 증거로 판단해 주십시오.

4. 사후 자료 삭제는 엄정히 살피되 그 입증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관련 법정에서 장관과의 통화기록과 수용 여력 문건을 삭제하고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삭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사건과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보안문서를 정리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설명에 긴장이 존재하는 사안은 가볍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자료 삭제의 시기, 대상, 방법과 그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사후 삭제의 동기와 계엄 당일의 범죄 고의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 행동이 당시의 위법성 인식이나 가담 의도를 추론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정황이 어느 시점의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구분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삭제 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별도로 판단하되, 이를 근거로 앞선 모든 행위를 내란 수행을 위한 것으로 한꺼번에 단정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보고서의 작성·수정·전송 경위와 삭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판단의 균형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불리한 증거를 피하지 않으면서도, 그 증거가 실제로 증명하는 범위를 넘어 해석되지 않는 공정한 심리를 간청드립니다.

5. 관련 항소심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따로 판단해 주십시오.

2026년 10월 21일 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지시가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서울구치소의 세부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 등 일부 행위는 그 존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교정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똑같이 '수용'과 관련된 행위라도 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직권남용 부분의 무죄 판단을 곧바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관한 무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항소심은 오히려 수용 여력 검토 지시를 내란의 중요한 임무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장관의 인식과 지시를 판단한 근거가 신용해 피고인 자신의 고의와 의식적인 가담을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는 이 사건에서 별도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저는 피고인이 전체 범행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87조 제2호와 제91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실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의식적으로 수행했는지가 본인의 행위와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어 –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사건의 모든 기록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 아니기에 피고인의 결백을 사실로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용 여력 보고, 제목 변경, 후속 검토, 자료 삭제라는 각각의 사정을 빠짐없이 검토하더라도 그것이 형사법상 요구되는 모든 구성요건을 충분히 증명하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가적 사건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명과 개인의 무죄추정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재판부께서 신용해 피고인의 당시 인식과 구체적 행위, 실제 기여 정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심리하시고, 범죄의 성립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제325조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